

교직원 명예퇴직 및 수당 지급 규정

제정 2016. 02. 02

개정: 2017. 09. 01

제 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대구신학원 정관 제48조의 2(명예퇴직수당)에 의거하여 대신 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 라 한다) 교직원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(이하 “수당” 이라 한다)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원과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 3조(적용대상)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자는 본 대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(휴직기간 제외) 하고 퇴직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교직원이 정년퇴직일 전에 자진하여 퇴직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 다만, 교직원의 수급계획 및 예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총장은 명예퇴직자를 제한할 수 있다.

②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본 대학교의 구조조정 등과 같은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퇴직해야 할 경우 20년 미만 근속한 경우에도 전항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.

제 4조(대상자 제한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.

1. 명예퇴직신청 개시일 현재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
2.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징계 중에 있는 자
3.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
4. 질병 또는 부상으로 폐질 상태가 되어 자진 퇴직하는 자
5. 기타 명예퇴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

제 5조(명예퇴직 신청절차) ①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지급 신청서(별표 1)를 명예퇴직예정일 90일 전에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교원은 교무처장에게, 직원은 총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 9. 1)

② 전항의 명예퇴직예정일은 매 학기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6조(명예퇴직자 심사 및 선정) ①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명예퇴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명예퇴직심사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명예퇴직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고 선정하여 총장에 추천한다.

1. 장기근속 교직원
2. 상위직 교직원
3. 공상으로 폐질상태에 이른 교직원
4. 기타

③ 총장은 명예퇴직자를 결정한 후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명예퇴직자 및 수당 수급대상자를 확정한다.

제 7조(수급대상자 통지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대상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원은 교원인사부서에서, 직원은 직원인사부서에서 소속 부서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(별표2)로 통지하여야 한다.(개정 2017. 9. 1)

제 8조(사직원 제출)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수당지급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명예퇴직 예정일에 당연히 퇴직한다.

제 9조(퇴직수당) 퇴직수당 지급액은 명예퇴직자의 정년 잔여월수에 따라 지급한다.

1. 정년퇴직일 1년 이상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자는 퇴직예정일 당시 본봉(기본급) × 정년 잔여월수 × 50% (2017. 9. 1 개정)
2. 정년퇴직일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자는 (퇴직예정일 당시 본봉(기본급) × 정년 잔여월수 × 50%)) + (퇴직예정일 당시 본봉(기본급) × 정년잔여월수 중 60개월을 초과하는 잔여월수 × 25%)) (2017. 9. 1 개정)
3. 10년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4.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월수의 계산은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은 1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(수당지급)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 제9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.

② 전 항의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일시불로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이사회 통과일: 2016년 2월 2 일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 1)

교직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

접 수		담당	과장	처장	총장
접수일자					
접수번호					

성명		주민등록번호	
소속		직위	
주소			
명예퇴직청원일		정년 일	

본인의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을 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지급 규정에 의거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합니다.

※ 첨 부 : 1. 인사기록 카드 사본(원본대조 확인) 1부.
2. 종합의료기관장 발행 진단서(공상퇴직자) 1부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 소속부서장 : (인)

대신대학교 총장 귀하

※ 아래사항은 본인이 기재하지 않고 해당(인사 부서)에서 기재한다.

학교임용일		근 속 년 수	년 개월
정년퇴직일		정년잔여월수	개월
수당지급 대상기간		수당지급액	
산출근거			

(별표 2)

교직원 명예퇴직수당지급 통지서

수신 :

아래와 같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합니다.

- 아 래 -

1.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인적사항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2. 명예퇴직수당 결정액 : 원정(W)

3. 명예퇴직수당 지급예정일 :

4. 첨 부 : 사직원 양식 1부 끝.

20 년 월 일

대신대학교 총장

(별표 3)

사 직 원

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년 월 일부터
사직하고자 합니다.

이름 성명 성

본인: (인)

대신대학교 총장 귀하